

아프리카 주요 자원부국의 자원개발관련 세제연구

삼일회계법인
최종일 상무

I. 서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환경오염과 개발국대화에 따른 광물자원의 고갈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석유, 가스, 철광석 등과 같은 광물자원은 산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서 무존재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산업화에 따른 수요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입각하여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기업들은 '자원외교'의 기치하에 인도네시아, 호주, 카자흐스탄, 브라질 등 세계각국의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 및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자원부국들에 대한 개발 및 투자가 점차 포화되고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의 에너지수입국들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프리카를 자원 확보의 중요한 전략지역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리카에 무존하는 풍부한 자원에 대한 개발 및 투자를 통한 자원선점은 우리나라 자원개발 방향의 블루오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해외 주요 에너지수입국들이 이미 아프리카에 진출하여 다각적인 진입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와의 경제적, 외교적인 관계가 미미하여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에서의 자원개발 사업진출

이 어려우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감과 제도적 불투명성은 사업의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자원개발산업은 자원보유국 정부가 과세나 이익공유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투자시 관련 세제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에 준하여 아프리카 최대의 자원개발국이며 우리나라와 이중과세 조약 및 1)이중환율제도를 체결한 아프리카 자원부국 중 투자 최적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과 과거 아프리카 최대의 부국이었지만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 자원개발이 중단되었다가 최근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이하 '콩고')의 자원관련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남아공 및 콩고의 난해한 자원관련세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II. 남아공의 자원관련 세제연구

1. 남아공 투자시의 사업단계별 세부담 구조

일반적인 자원개발사업은 자원부존 가능성이 있는 대상지역을 사전 조사한 후 광구권등의 확보 후 지질탐사 및 중력탐사 등의 탐사를 실시하여 부존 가능성이 높은 위치를 선정하여 매장량 평가를 거쳐 개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의사결정단계 이후 경제성이 있는 자원에 대한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개발 단계가 종료되면 비로소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사업단계를 거치는 동안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자본조달이 이루어지고 개발 및 생산이 시작되는 운영단계를 거쳐 생산 중 또는 생산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매각단계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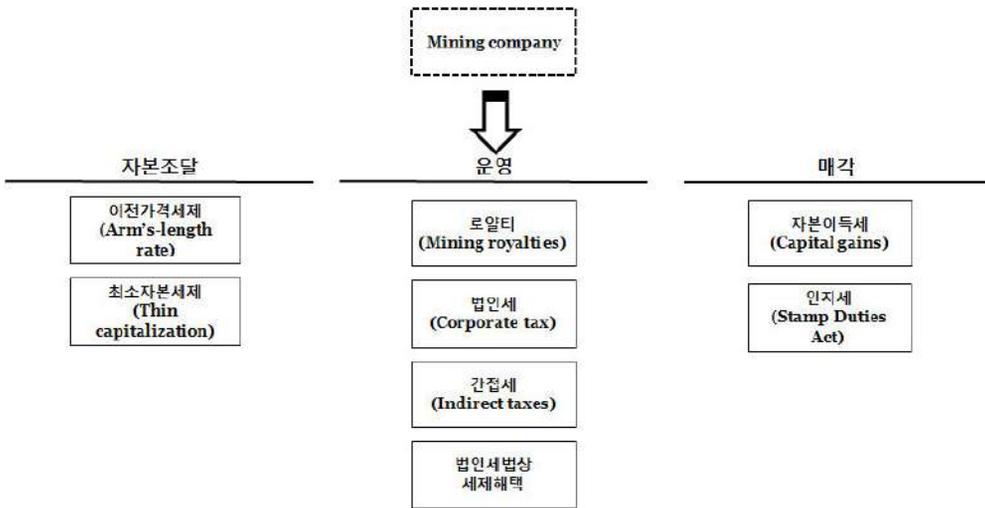
남아공의 자원관련세제는 각 사업단계별로 자본조달, 운영, 매각단계에서 부과되는 세제부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본조달시에 부과되는 세제부담으로는 이전가격세제와 최소자본세제의 논리에 입각한 손급불

1)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 시 적용되는 환율을 뜻하며 Financial Rand라고 한다. Financial Rand는 일반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환율인 Commercial Rand에서 20~30% 할인된 환율제도이다.

산업 규정이 있고, 운영 시 부과되는 세제부담으로는 법인세, 로얄티,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또한 매각단계에서는 자산의 처분에 의한 이익에 부과되는 자본이득세와 인지세가 있다.

각 사업단계별 세부담 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1 > 사업단계별 세부담 구조



2. 운영단계의 세제연구

(1) 법인세

남아공내에서 광물자원에 대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Corporate tax)가 부과된다. 이는 2001년 1월 1일 제정되어 남아공내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게 유효적으로 적용되며 South African Income Tax Act라는 남아공 세법에 따라 부과된다.

(1)-1 원천소득

법인세 과세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천소득은 내국법인여부에 따라 다르다. 남아공법에 따라 설립되어 남아공에 주소지를 둔 주식회사 또는 주사업장이 남아공내에 소재하여 남아공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고 하며 이외의 법인들은 외국법인으로 분류한다. 법인세 과세시의 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과 비슷한데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모든 국내외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부과되고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부과된다.

(1)-2 세율

우리나라 현행 법인세의 경우 영리, 비영리법인 모두 과세표준 2억 이하는 10%의 세율이 부과되고 2억초과분에 대하여는 22%의 세율이 부과되는 2단계의 초과누진세율(**Progressive tax rate**)을 적용하는 반면 남아공의 법인세율, 특히 자원관련세제에 적용되는 세율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및 적용방식과 상이하다. 남아공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2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특징에 따라 적용되는 유효세율이 달라진다.

첫 번째 특징은 배당의 선언여부이다. 남아공에서는 내국법인이 배당을 선언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원천징수세 성격인 10%의 2) **STC(Secondary tax on companies** 이하 'STC')를 과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유효세율이 달라진다.

두 번째 특징은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금을 채광하는 지(**Mining for gold**)의 여부이다. 3)금 채광법인은 배당을 선언한 경우 STC의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남아공내의 광물자원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유효세율은 배당선언여부, 금채광여부에 따라 다음의 여러

2) Section 64B (12) of the Income Tax Act No.58 of 1962에 정의되어 있으며 추후 STC는 당초 2010년에 Dividend withholding tax (5%~10%내외)로 개정 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3) South African Income Tax Act에서는 금채광법인의 범위에 대하여 금을 채광하는 법인 이외에도 우라늄을 채광하는 법인을 이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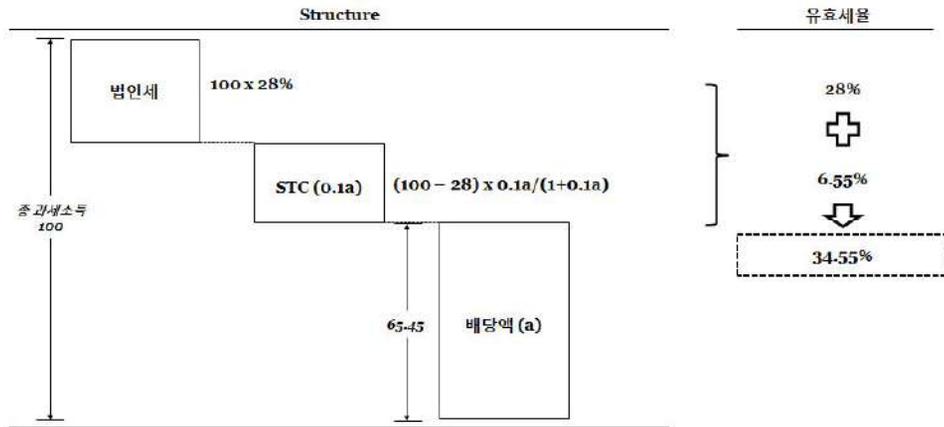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

(가) 금을 채광하지 않는 법인

금을 채광하지 않는 법인이 배당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배당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28%의 기본세율 적용 후 배당을 선언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원천세의 성격인 10%의STC를 추가적으로 과세한다. 또한 금을 채광하지 않는 법인이 배당을 선언하는 경우에 STC의 적용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닌라 필수사항 이다.

배당선언시 유효세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그림 2 > 금을 채광하지 않는 법인의 배당선언시 유효세율



총 과세소득을 100으로 가정하면 우선 28%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8의 법인세가 산출된다. 총 과세소득에서 법인세 28을 차감한 72를 전액 배당한다고 가정한 경우 배당액을 (a)라 가정하면 STC는 (a)의 10%로 산출된다. 이 산식을 통하여 STC를 도출하면 배당액은 65.45가 되고 STC는 이의 10%인 6.55가 된다. 따라서 배당선언시 적용되는 유효

효세율은 28%의 기본세율과 배당금액에 대한 10%를 총 과세소득기준으로 환산한 6.55%의 합인 34.55%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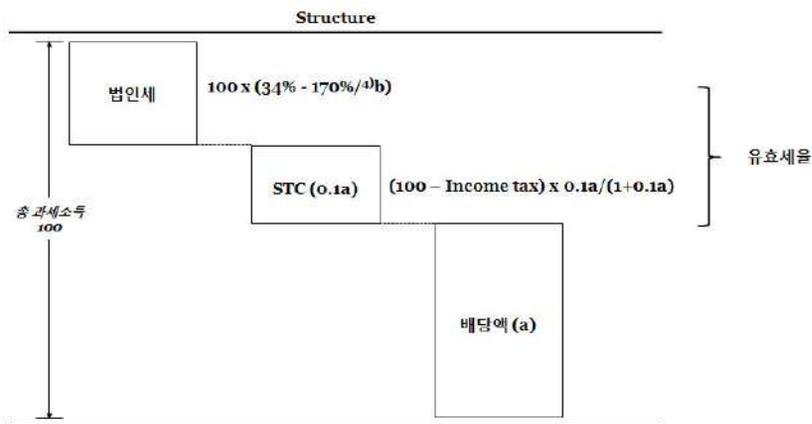
(나) 금을 채광하는 법인

금을 채광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광물채취로 인한 소득과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또한 배당이 선언된 경우에는 10%의 STC가 과세되는데 가장 큰 이슈사항은 STC의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1 광물채취로 인한 소득 (Mining taxable income)

금 채광법인이 배당을 선언하는 경우 STC의 적용을 선택한다면 광물채취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유효세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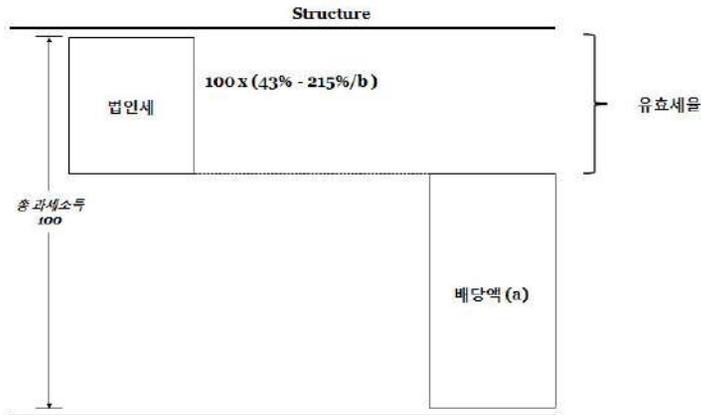
< 그림 3 > 광물채취로 인한 소득에 대한 유효세율 (STC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



법인세에는 총 과세소득에 대하여 (34%-170%/b)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4b는 법인의 총 매출액에서 금 채취로 인한 과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전체 과세소득 중 금 채취로 인한 과세소득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증가하게 되어 전체 과세소득 중 금 채취로 인한 과세소득의 비율이 유효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계산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전액 배당한다고 가정한다면 STC에 대한 계산논리는 상기 (가)에서 설명한바와 동일하다.

STC의 적용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적용되는 유효세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그림 4 > 광물채취로 인한 소득에 대한 유효세율
(STC의 적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STC의 적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상향조정된다. 세율적용의 논리는 STC를 선택한 경우와 동일하나 기본세율이 (34%-170%/b)에서 (43%-215%/5b)로 증가한다. 이는 STC 정수를 법인세로 대체 정수한다는 논리이다.

4) b = Taxable income from gold mining / Total revenue (turnover) from gold mining

5) b = Taxable income from gold mining / Total revenue (turnover) from gold mining

앞서 설명한 논리에 근거했을 때 STC의 적용여부를 선택시 주요 판단지표는 총 매출액대비 금 채취로 인한 과세소득의 비율(이하 '과세소득비율')이다. 과세소득을 100이라 가정하고 배당금액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STC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와 STC의 적용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유효세율이 같아지는 과세소득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text{- STC를 적용하는 경우} = \{100 \times (34\% - 170\% / \text{과세소득비율})\} + [100 - \{100 \times (34\% - 170\% / \text{과세소득비율})\}] \times (0.1 \times \text{배당금액}) / \{1 + (0.1 \times \text{배당금액})\}$$

$$\text{- STC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100 \times (43\% - 215\% / \text{과세소득비율})$$

두가지 경우의 값이 동일한 과세소득비율을 계산하여 보면 20.15%가 산출된다. 20.15%를 기점으로 과세소득비율을 증가시키면 STC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유효세율이 증가하고 과세소득비율을 감소시키면 STC를 적용하는 경우의 유효세율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과세소득비율 20.15%는 STC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한계점이 되고 20.15%를 초과시에는 STC를 적용하는 경우가 유리하게 되며 미만시에는 STC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유리하게 된다. 남아공내에서 내국법인이며 금 채광법인으로 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투자 할 경우에는 필히 사전에 이를 고려하여 STC의 적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한다. 6) 또한 STC의 선택시에는 사업개시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2 이외의 소득 (Non-mining taxable income)

금 채광법인이 배당을 선언하는 경우 STC의 적용을 선택한다면 광물채취로 인한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유효세율은 34.55%⁷⁾이다. 배당선언시 STC의 적용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35%

6) Section 64B (12) of the Income Tax Act No.58 of 1962

7) 이는 금을 채광하지 않는 법인의 유효세율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된다.

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⁸⁾

(2) 로얄티 (Mining royalties)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로얄티(Mining royalties)는 2010년 3월에 제정된 The Mineral and Petroleum Resources Act에 의하여 부과된다. 로얄티가 부과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권리를 소유하고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한 이윤창출과정이 필요하다. The Mineral and Petroleum Resources Act에서 정한 권리에 는 탐광·채광·탐사·생산권리, 보유허가(Retention permit), 소규모 채광허가(Mining permit), 리스 등을 통한 생산권 보유, 남아공 Mineral resource에 대한 개발 및 복구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를 소유하며 채광자원에 대하여 매각, 수출, 소비 및 사용 등을 통한 이윤창출활동이 이루어진 법인에 대하여는 로얄티가 과세된다.

로얄티는 과세표준의 원천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선광작업의 단계에 따라 Refined와 Unrefined의 2단계로 구분한다. Refined는 제련이나 정제같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선광작업이 완성된 상태이며 The Mineral and Petroleum Resources Act에서는 Refined된 광물의 단계를 Schedule 1에 정의하고 있다. Unrefined는 제한된 정제과정을 거친 상태이며 Schedule 2에 정의하고 있다.

8) STC의 면제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각 단계에 정의된 광물의 종류와 정제상태는 다음과 같다.

< 그림 5 > The Mineral and Petroleum Resources Act에 정의된 정제상태

SCHEDULE 1	
REFINED CONDITION OF MINERAL RESOURCES	
Mineral resource name	Refined condition
Cobalt	Cobalt is refined once processed into cobalt metal or cobalt sulphate 99.5 % refined
Copper	Copper is refined once processed into copper metal slabs, blister copper or cathode copper of at least 99.0% purity.
Germanium	99.99% refined product
Gold	Refined and smelted to a 99.5 % purity
Lead	Lead is refined once processed into bars and billets containing at least 99.0 % pure lead
Lithium	99.5% LiC03 in concentrate (lithium carbonate)
Mercury	99.9% purity
Nickel	Nickel is refined once processed into a metal, or other form (e.g. ferro nickel, nickel metal or nickel sulphate).99.5% purity
Platinum Group Metals	Refined and smelted to a 99.9 % purity
Molybdenum	99.99% refined product
Silicon	98.5% Si
Silver	Silver is refined once processed to silver metal or silver nitrate. 99.5% refined
Talc	98.5% and minus 325 um mesh
Zinc	Zinc is refined once processed into zinc metal, plates or slabs containing at least 98.5 % pure zinc

SCHEDULE 2	
UNREFINED CONDITION OF MINERAL RESOURCES	
Mineral resource name	Unrefined condition
Aggregates	Bulk
Antimony	65% Sb content in the concentrate
Barite	Concentrates with 97% BaS04
Beryllium	70% beryl concentrate
Chrome ore in lump, chips and fines	(i) 37% to 46% Cr203 in concentrate; (ii) 4% to 10% SiO2 and a (iii) Cr/Fe ratio of 1.25 to 1.45 (chip and lump) or (iv) 0.8% to 6% S i 0 : and (v) Cr/Fe ratio of 13 to 1.6 (fine < 1mm)
Coal	Grade A: <i>in situ</i> calorific value equal or greater than 27.5 GMJ/kg Grade B: <i>in situ</i> calorific value equal of greater than 26.5 GMJ/kg and less than 27.5 GMJ/kg Grade C: <i>in situ</i> calorific value equal or greater than 19.0GMJ/kg and less than 26.5 GMJ/kg Grade D: <i>in situ</i> calorific value less than 19.0 GMJ/kg
Cobalt	7% Co in a polyminerallc matte
Copper	20% to 30% Cu
Diamond	Rough Diamonds
Fluorspar	80% concentrate
Graphite	86% carbon content
Iron ore	61 % to 64% Fe content
Lead	Concentrate with a minimum of 50%> Pb
Limestone	Concentrate with a minimum of 54% CaCO
Manganese	Manganese ore: Mn 37% to Mn 48% and Si + Al less than 11%
Mica	48% concentrate
Ilmenite	75% ilmenite concentrate
Rutile	53% Rutile concentrate
Zircon	85% Zircon concentrate
Nickel	1.4% Ni content
Niobium	45% N i :0 :in concentrate

Refined와 Unrefined로 구분된 과세소득에 따라 각각 상이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Refined된 광물로 인한 과세소득에는 5%와 $0.5\% + \{EBIT\} / \{ \text{Refined된 광물로 인한 과세소득} \times 12.5\% \} \times 100$ 의 비율 중 작은 비율을 적용하며 Unrefined된 광물로 인한 과세소득에는 7%와 $0.5\% + \{EBIT / \{ \text{Refined된 광물로 인한 과세소득} \times 9\% \} \} \times 100$ 의 비율 중 작은 비율을 적용한다.¹⁰⁾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6 > 정세상태별 로열티의 적용세율



(3) 간접세 (Indirect taxes)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남아공의 간접세에는 남아공내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 수입 및 수출시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와 광구권 (Mining right)나 주식같은 유가증권의 양도에 따른 인지세가 있다.

(3)-1 부가가치세 (Value-added tax)

남아공세법상 면세로 지정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14% 또는 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로 지정되거나 0%의 세율로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은 남아공 세법에 열거되어 있다. 남아공내의 수입업을 하는 경우 남아공 국세청(South

9) section 5 of the Royalty Act에 정의되어 있으며 회계적인 목적의 EBIT와 달리 음의 값이 도출된 경우 0으로 간주한다.

10) Section 4(1) of the Royalty Act

African Revenue Service)에 수입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남아공의 부가가치세는 도착지기준 과세이기 때문에 남아공으로 수입시 공급되는 재화는 14%의 기본적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국외 특수관계자로 부티의 수입시에는 정상가격에 대한 검토가 국세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0%의 영세율이 적용된다.

(3)-2 인지세 (Stamp Duties Act)¹¹⁾

광구권이나 주식같은 유가증권의 양도시에는 양도가액이나 시가의 0.25%에 해당하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4) 법인세법상 세제혜택

남아공내의 자원개발회사에 대해 세액공제등의 특별한 세제혜택이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자본적지출(Capital Expenditure)에 대하여 비용공제(Write-off) 및 가속상각 등의 방법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기간제한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연구개발비(R&D)에 대하여는 비용처리하였을 경우와 자산화한 경우에 대하여 각기 다른방법으로 손금을 인정하고 있다.

(4)-1 Capital Allowance

채굴권(Mineral rights), 광업권(Mining rights), 지상권(Surface rights) 등의 자산에 대한 권리 취득시 지출되는 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게 되고 관련 자산의 매각 시 실현되어 자본이득세로 과세된다.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비용은 South African Income Tax Act에서 조사(surveys), 시추공작업(boreholes) 및 기타 탐사활동관련 비용등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손금인정시에는 남아공내에서 발생한

11) 2009년 4월1일부로 기존의 Securities transfer tax가 Stamp Duties Act로 개정되었다.

비용에 대하여만 인정되며 광물 자원으로 인한 과세소득에서만 제한적으로 손급처리된다.

자원개발의 특성상 초기 투자금액이 막대하고 투자금의 회수가 장기간에 걸쳐 집행됨에 따라 남아공에서는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적지출(Capital Expenditure)에 대하여 가속상각방법을 이용한 손급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손급처리에는 일정한 규제조항을 정하여 손급처리의 과잉을 방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를 Ring-fencing이라고 한다. 남아공 법인세법상에는 3가지의 **Key Ring-fencing** 규정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는 Capital Expenditure에 대한 상각비 공제 등은 광업으로 인한 과세소득에서만 손급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광업외의 다른 기타의 수익으로 인한 과세소득에서는 손급처리가 불가능하다.

둘째는 기본적으로 광산별(Mine-by-mine)로만 대응하여 손급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1990년 3월 14일 이후 생산 및 운영이 시작된 광구에서 발생한 자본적 지출의 상각비는 해당 광구의 과세소득에서 손급처리 이후 해당 광구의 익금액을 초과하는 손금액에 대하여 다른 광구의 과세소득 대비 25%를 한도로 다른 광구의 과세소득에서 손급처리가 가능하다.

셋째는 해당광구에서 손급처리가 모두 되고 다른 광구 과세소득의 25%까지 손급처리가 된 이후의 잔여금액은 차기년도로 이월된다. 이때 잔여금액에 대하여도 다른 기타의 수익으로 인한 과세소득에서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4)-2 걸손금 이월공제

걸손금 발생시에는 기간제한 없이 전액 이월공제된다.

(4)-3 연구개발비 (R&D)

연구개발비(R&D)는 비용처리 하였을 경우와 자산화한 경우 각각 상이하게 손급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R&D 지출액 등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의 150%를 손급으로 인정한다. 또한 R&D 지출액 등을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으로 자산화한 경우에는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의 50%, 30%, 20%를 손급으로 인정한다.

3. 매각단계의 세제연구

남아공내에서는 광권(Mining Right)이나 부동산 등의 모든 자본자산의 거래에 대하여 2001년 10월 1일 이후부터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적용하고 있다.

(1) 과세대상 자산

자본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여부에 따라 상이하며 적용되는 세율은 금 채광 여부와 STC의 적용여부에 따라 상이하다. 내국법인은 소유하는 모든 국내·외 자본자산의 거래에 대하여 자본이득세가 부과되고 외국법인은 국내소재의 부동산 및 국내사업장관련 자산 및 자산에 대한 권리의 거래에 대하여 자본이득세가 부과된다. 광권(Mining Right)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 간주되며, 만일 외국법인이 남아공내의 광물자원회사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매각으로 보아 자본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2) 적용세율

자본자산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이득에 대한 적용세율은 금 채광 여부와 배당선언시 STC의 적용여부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금을 채광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STC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14%의 세율이 일괄

적으로 적용된다. 반면 금을 채광하는 법인은 해당선언시 STC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4%의 세율로 과세되고 STC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17.5%의 세율로 과세된다. 만약 자본자산의 거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되어 추후에 발생하는 자본이득과 상쇄된다.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종류에 상관없이 상계처리가 가능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이익계정과는 상계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7 > 자본이득세



4. 자본조달단계의 세제연구

남아공내의 자원개발투자 시 부족자금에 대하여 타인자본(Borrowed capital)으로 자본조달을 하는 경우에는 Transfer pricing(이전가격세제)와 Thin capitalization(최소자본세제)의 논리에 입각한 2가지의 규제사항이 있다. 현행 국내세법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리가 존재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상이하다.

(1) 이전가격세제

이전가격세제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가격세제의 목적은 특수관계거래에 있어 거래당사

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하는 과세소득이 얼마인가를 밝히는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납세자와 독립기업인 납세자를 과세목적상 같이 취급할 수 있으며 또한 특수관계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납세자의 의도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크게 전통적 거래방법과 거래이익방법으로 나뉜다. 남아공내에서의 자본조달시에는 전통적 거래방법에 속하는 비교가능 제삼자 가격방법의 논리가 적용된다. 여기에서 제삼자 간 거래란 특수관계기업의 일방이 제삼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삼자가 특수관계기업 일방에게 판매하는 경우, 특수관계기업과 관련이 없는 독립기업 간 거래의 경우 등을 말하며 이러한 제삼자 간 거래에서 책정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남아공내에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타인자본을 조달시에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된다. 타인자본조달시 이자율이 **Arm's-length rate**(적정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적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는 법인세 산정시 손금인정이 되지 않으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적정이자율로 조정하여야 한다. 남아공내의 적정이자율은 통상 시장에서 적용되는 이자율로 정의한다.

(2) 과소자본세제

기업이 필요자금 조달 시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경우 이자비용에 따른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기자본을 통한 출자보다는 타인자본을 통한 자본조달을 선호하게 된다. 차입금에 대한 의존비율이 상항되면 자금의 대여자가 실질적인 회사의 위험을 분담하게 되기 때문에 차입금의 반환이 기업의 사업성공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이러한 과다 차입금을 통한 조세회피 의도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과소자본세제이다.

과다 차입금을 판정하는 방법은 고정비율기준 판정과 독립기업 비율기준 판정의 2가지 방법이 있다. 고정비율기준은 정상적인 자본금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을 법으로 정하여 과다 차입금을 판정하고 독립기

업 비율 기준은 독립기업접근법에 따라 동종기업의 차입금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남아공의 과소자본세제는 고정비율기준의 방법이 적용된다. 남아공 내에서는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출자한 주식,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추후 STC계산의 전제금액이 된다. 따라서 과소자본세제로 인한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본금이 자산의 25%이상¹²⁾이 되어야 한다.

III. 콩고민주공화국의 자원관련 세제연구

콩고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인구 규모 2위, 국토면적 3위의 대국으로 열대우림의 비옥한 토양,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한때는 아프리카에서 남아공보다도 잘사는 나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¹³⁾ 그러나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과 내전등으로 인한 경제발전 지하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였기 때문에 최근들어 콩고에 대한 세계 에너지 수입국가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콩고에서도 현재 지하자원 개발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개발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정부와 기업들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방안과 사업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한 전략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대로 아프리카에서의 자원개발 사업진출은 어렵고 아프리카 국가들, 특히 콩고의 정치적 불안감과 제도적 불투명성, 정보의 부족은 사업의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콩고의 자원관련 세제구조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콩고 투자시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준하여 콩고의 자원관련세제에 대하

12) 부채비율(Debt ratio) 300%

13) 정우진, 2009, 아프리카 자원개발 진출 전략 연구, 에너지 경제 연구원

여 취득, 운영, 매각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에 따른 세제부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취득단계의 세제연구

(1) 등록세 (Registration Fees and Stamp Duties)

광물자원회사에 대하여는 세제혜택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법인 설립시 과세되는 등록세(Registration Fees)와 인지세(Stamp Duties)가 면제된다.

(2) 거래세 (Turnover Tax)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발생하는 거래세는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성격의 간접세로서 콩고의 현행 세법상 자원개발회사의 지분 취득의 대가로 자산을 납입하는 현물출자에 대하여 거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회사 설립시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 등의 여러 가지 설립 절차가 요구된다. 또한 현물출자시 출자되는 자산은 현물출자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되며, 감가상각 개시 시점은 개발단계이다.

2. 운영단계의 세제연구

콩고의 경우 광물자원개발회사(Mining company)에 대하여 특별한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운영단계에 적용되는 세목 중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법인세, 배당·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세, 거래세(Turnover Tax), 로얄티, 지상권세, 근로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자동차세, 도로세 등이 있다. 또한 유리한 세제혜택이 추후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세법에 대한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된 세법을 적용시에는 회사의 사업단계별로 개정효력의 발생일이 상이하다. 채굴단계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개정 후 10년 이후부터 개정의 효력이 발생하며, 개발단계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개정효력의 유예기간(10년)이 채굴허가

가 부여된 시점부터 기산된다. 이러한 개정의 효력에 대하여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유리한 개정이라면 즉시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1) 법인세

콩고의 일반적인 회사에 대한 법인세율은 40%이며 자원개발회사에 대한 법인세율은 세제혜택이 적용되어 30%가 과세된다. 자원개발회사는 초기 투자금액이 막대하고 회수기간이 긴 특성에 따라 초기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제한의 성격으로 최저한세(Minimum tax)가 과세되고 있다. 최저한세는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500 USD 와 연매출액, 특별수익, 이자수익의 합에 대한 0.1%의 금액 중 작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최저한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text{Min} = [(\text{연 매출액} + \text{특별수익} + \text{이자수익}) * 0.1\%, 2,500 \text{ USD}]$$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5년간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만 감가상각으로 인한 결손에 대하여는 기간제한 없이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광물자원회사의 과세표준에 대한 원천소득은 광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광업권의 양도를 포함한 자산 양도소득으로 구성된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은 세무목적상 비용으로 인정되나, 다음의 비용의 경우 세무목적상 손금인정에 대하여 한도 및 예외규정이 있다.

(1)-1 이자비용

콩고 국내법인으로 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세무목적상 제한없이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국외 제3자로 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하여는 정상가격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정상가격(Arm's length)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¹⁴⁾

14) 앞서 설명한 남아공내의 이전가격세제와 비슷한 논리이다. 남아공내에서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타인자본을

(1)-2 감가상각비

공고에서는 자원관련회사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정액법을 표준 감가상각법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공업, 추출, 운송(자가용 제외) 등을 위한 설비, 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와 안정장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정률법과 가속상각법을 허용하고 있다. 가속상각법의 경우에는 60%의 상각률을 허용하고 정률법이나 가속상각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감가상각방법 및 상각률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또한 채굴허가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자본화가 가능하며, 이는 채굴시점부터 2년간 50%의 상각률로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1)-3 기술지원 및 관리비용

(Technical assistance/Management Fee)

기술지원 및 관리비용은 실제 공고에서는 수행될 수 없는 종류의 용역이지만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다. 첫 번째는 용역의 실제발생여부이며 두 번째는 발생한 용역의 금액이 정상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4 충당금

공고에서도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충당금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의 2가지 충당금에 대하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광구복구충당금(**Provision for restoration of the mining site**)으로써 회사는 최대 과세소득의 5%까지 광구복구충당금이라는 계정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설정 이후 3개년간 개발을 위한 비용이나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본금 납입으로 사용되는 경우 손금으

조달시에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된다. 타인자본조달시 이자율이 Arm's-length rate(적정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적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는 법인세 산정시 손금인정이 되지 않으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적정이자율로 조정하여야 한다. 남아공내의 적정이자율은 통상 시장에서 적용되는 이자율로 정의한다.

로 인정된다.

두 번째는 부지재건충당금(**Provision for site rehabilitation**)으로써 회사는 최대 연매출의 0.5%까지 부지재건충당금이라는 계정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설정 이후 10년간 사용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다.

(1)-5 간접비

통신비, 연료비, 자동차유지비 등의 간접비는 전체 금액의 10~30%사이의 일부분만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2) 원천징수세

공고에서 과세되는 원천징수세에는 이자, 배당, 로얄티, 용역공급시의 수수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있다.

(2)-1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기본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국내은행(Congolese banks)에서의 차입금과 국외에서 발행되고 외화로 표시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가 면제되어 차입금 조달시 국외에서 조달하는 것이 유리하다.

(2)-2 로얄티

로얄티는 지적재산권의 사용, 산업용이나 상업용 또는 과학 장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된다. 로얄티의 과세표준 산출시에는 통상 30%의 할인(Rebate)가 적용되어 로얄티에 대한 원천징수의 유효세율은 14%가 된다.

(2)-3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나 자원개발회사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적용되어 10%가 부과된다.

(2)-4 수수료

소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통상 대규모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 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많지 않다.

(3) 거래세 (Turnover Tax) 및 부가가치세 (VAT)¹⁵⁾

현재 콩고에서는 부가가치세제도와 유사한 거래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거래세는 개발단계와 생산단계에서 그 내용이 상이하다.

(3)-1 개발단계

거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단계에서는 통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수입 및 취득에 대하여만 거래세가 과세된다. 거래세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자에 의해서 공급되는 공급가액 총액이 되며 세율은 생산지와 자원개발회사여부에 따라 상이하다. 광물자원개발회사에 의해 수입되는 재화나 장비에 대하여는 거래세가 면제되며 콩고 현지 생산 재화의 취득에 대하여는 3%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자원개발활동과 관계있는 용역의 취득에 대하여는 5%, 관계없는 용역에 대하여는 18%,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30%의 거래세가 과세된다.

15) 최근 거래세 제도와 유사한 부가가치세의 도입이 통과되어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광물 자원회사의 세제혜택에 따라 10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적용의 선택이 가능하다.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계산되며 단일세율인 16%가 적용되고 수출품에 대하여는 0%의 영세율이 적용된다. 매입 부가가치세가 매출부가가치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한없이 이월공제가 가능하지만 환급과 다른 세금항목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발 단계에 다량으로 발생한 매입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제나 환급 받기는 어렵다.

(3)-2 채굴단계

생산단계에서는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에 광물자원제품의 판매 수입을 발생시키게 되어 판매에 대한 거래세도 과세된다. 해외수출에 대하여는 거래세가 면제되며 일반적인 국내 판매에 대하여는 10%의 거래세가 과세된다.

(4) 로얄티

로얄티는 생산단계에서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광물자원관련 총 매출액에서 운송비, 분해비용(Analysis cost), 보험료비용 및 마케팅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로얄티세율은 광종별로 상이하며 콩고의 대표 광종인 구리에 대한 세율은 2%이다. 로얄티는 법인세 계산시 손금항목으로 인정되며 광물자원관리국(Mining Administration)에서는 로얄티의 개산을 검토하고 과소 납부된 로얄티에 대하여 청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 지상권세 (Superficies Tax)

광물자원회사는 광업권에 대하여 지상권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상권세는 해당 면적(Hectare)에 따라 부과된다. 적용되는 세율은 개발 및 생산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각 기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 표1 > 기간별 지상권세 세율

기간	개발단계	생산단계
First year	0.0241 USD per hectare	0.0481 USD per hectare
Second year	0.0361 USD per hectare	0.0722 USD per hectare
Third year	0.0421 USD per hectare	0.0842 USD per hectare
Fourth year and following years	0.0481 USD per hectare	0.0963 USD per hectare

지상권세 납부시에는 Fee per carre라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Carre는 약 85 Hectare이며 역시 기간별로 상이한 세액 적용된다. Fee per carre의 기간별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개발단계

Year 1 & 2 : 3.068 USD per carre, Year 3 to 5 : 31.692 USD per carre, Year 6 to 10 : 52.100 USD per carre, Year 11 to 15 : 149.223 USD per carre

- 채굴단계

511.096 USD per carre

3. 매각단계의 세제연구

공고에 투자시 취득한 주식 및 자산의 처분시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때 자원개발회사의 여부에 따라 앞서 설명한 법인세율과 배당 원천징수세율 등이 상이하게 적용된다.

IV. 결론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시에는 현지 국가에 대한 법률,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한 세후 순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국가 내국법의 과세제도와 이를 조정하는 조세조약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은 법제도가 발달하지 못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하며 경제적발전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동안 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투자와 수출시장 측면에서도 아프리카의 중요성은 계속 늘

의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에 대한 협력관계나 이해도는 초보적 수준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자원경쟁국에 비해 아프리카에 대한 인적 자원이나 정치 및 경제적 후원 역량이 크게 낮다.

아프리카의 자원개발투자시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가장 대표적인 나라 남아공과 콩고에 대한 세제연구를 수행하였다. 다른 자원선진국에 비해 아프리카와의 교류가 적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우리정부와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세제연구를 통한 효율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남아공에 대한 세제연구를 통해서도 개발하고자하는 광종의 종류와 배당의 선언여부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남아공에 투자시에는 광종의 종류와 배당선언 여부에 따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콩고에 대한 세제연구를 통해서도 자원개발회사에 대해 유리한 특례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해외 자원개발시에는 이러한 세법적인 측면 이외에도 자원보유국의 정치적 상황, 회사설립관련 법률 등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 하나를 간과하는 경우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한 세제연구를 바탕으로 다방면의 전문가들의 정보를 공유한 후 투자하는 것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정우진, 2009, 아프리카 자원개발 진출 전략 연구, 에너지 경제 연구원
2. Taxation in south africa 2011,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3. Review of trends in the South African mining industry, PwC
4. Mineral and Petroleum Resources Royalty Act, 2008, Government Gazette
5. INCOME TAX ACT 58 OF 1962,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6. DRC Tax Guide, PwC
7. Transfer Duty Handbook,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8. EXPLANATORY MEMORANDUM ON THE TAXATION LAWS AMENDMENT BILL, 2010,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